

제249회 연제구의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연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3 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7 면
3.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11 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16 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2 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7 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31 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35 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42 면
10.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45 면
11.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50 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2호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발의의원 : 소수련(대표발의), 권중현, 김기준,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최홍찬, 김미화

2. 제안이유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연제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나.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활동내용과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는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음.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이미 시행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도시안전과 제공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현황 〉

### 1. 안전보안관 제도

-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증가로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신고와 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최초 도입( '18.4월)

**\* 안전무시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과적운전 ④ 안전띠 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멍조끼 미착용

#### ○ 안전보안관

-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민

#### ○ 구·군별 인원 현황

\* 2023.6.30.기준 (단위 : 명)

총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1,210	88	77	64	67	93	92	88	78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89	118	88	54	60	55	45	54

#### ○ 연제구 안전보안관: 60명

- 안전모니터봉사단, 통장, 부녀회원 등 주민으로 구성

### 2. 부산시 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현황

- 필요성 :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영
- 제정 완료 : 북구, 사하구, 남구 총 3개 자치구

<b>붙임</b>	<b>관계법령</b>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13. 생략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3호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발의의원 : 김미화(대표발의), 김현규, 이의찬, 변준호, 권종현,  
소수련, 최홍찬

## 2. 제안이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를 높여 가족이 동행하는 교통·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연제구민의 주차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제2조에 제5호에서 가족배려 주차장 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제13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서는
  - ▷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대상은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 ▷ 이용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 ▷ 설치기준과 설치장소, 주차구획의 표시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음.

※ 설치대상 장소 : 연제구청,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금련, 과정, 황금로  
공영주차장 등이 해당됨.

### ○ 검토결과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맞추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함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 주 차 장 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출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연산8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한이불 마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을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한이불 마을센터	연제구 연산동 1000-1번지 (고분로113번길 19)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398.9㎡	

###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시설물(부지, 건물, 비품, 부대시설 등) 일체 운영·관리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갱신가능)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다. 위탁 근거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연산8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한이불 마을센터)에 대하여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2.5.)」에 따라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23.9.) 및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23.10.)한 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설물(부지, 건물, 비품, 부대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무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바 의회(안전복지위원회 소관)에 제출된 것으로,
-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위탁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이 타당하여 위탁 동의안은 동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한이불 마을센터의 주민교류 활성화 거점 공간인 마을사랑방, 문화창작소와 텃밭(치유농업사업) 등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참고자료 도시재생과 제공

### ○ 시설 개요

구 분	한이불 마을센터
위 치	연산동 1000-1번지 (고분로113번길 19)
사업내용	커뮤니티 카페(1층), 문화창작소, 사랑방(2층), 협동조합 사무실, 회의실(3층), 텃밭(옥탑)
위탁규모	지상3층, 연면적 398.9㎡
조성기간	2023. 4. ~ 2023. 12.
사 업 비	2,668백만원 (부지 840, 설계 66, 공사비 등 1,762)

### ○ 시설 운영 현황

층 별 (면 적)	시설 내용	운영 사항
1층 (125.76㎡)	커뮤니티 카페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카페 사업 운영
2층 (151.97㎡)	마을사랑방, 문화창작소	• 주민 교류 활성화 거점 공간 •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 교육장 운영
3층 (121.17㎡)	현장지원센터, 협동조합	• 現 현장지원센터(도시재생사업 종료시까지) •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옥상	-	• 텃밭(치유농업사업)

### ○ 위탁조건

- ① 연간 운영 수입과 지출액을 매년 결산하여 흑자인 경우 상호협약에 따라 수익금을 마을공동체 유지활동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
- ② 사용료: 면제
  - ▶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③ 위탁수수료: 없음
  - ▶ 시설물 하자보수에 따른 개·보수비 위탁기관 부담

<b>붙임</b>	<b>관계법령</b>
-----------	-------------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② 마을관리·운영 실시

- 실행계획 수립 시 계획한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기능) 생활편의시설 등 운영·관리, 마을공동체 회복 활동, 주거재생 대상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등
    - 특히,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운영의 자생적 구조 마련
    - \* 수익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운영수익, 생활편의시설 운영 수수료, 마을에 없는 상업서비스 제공(베이커리, 커피숍 등) 등을 중심으로 운영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해당 지역여건에 맞게 마을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경비 지원 및 필요시 조례 개정
  - 「공유재산법」외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및 마을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제19조의5(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별표4>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출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되고, 2023년 체납분 징수 등에 따른 관리대상 부존재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특별회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91,319천원)에 대해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8. 30. ~ 9. 2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특기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2006.11.14.)된 조례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3.28.)와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2013.7.10.)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 기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회계를 존치하였으나 2023.02.10. 체납금이 최종 징수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부존재하며, 그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17년 이후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 체납금 징수 후 조례 폐지 조치 권고가 꾸준히 있었음.
  
- ▷ 특별회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91,319천원)에 대해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함.
  
- 또한,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부칙에 해당 조례로 인한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제구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였고, 2023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연제구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하는 등 후속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b>붙임</b>	<b>관계법령</b>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출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되고, 2023년 체납분 징수 등에 따른 관리대상 부존재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특별회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91,319천원)에 대해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8. 30. ~ 9. 2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특기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2006.11.14.)된 조례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3.28.)와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2013.7.10.)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 기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회계를 존치하였으나 2023.02.10. 체납금이 최종 징수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부존재하며, 그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17년 이후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 체납금 징수 후 조례 폐지 조치 권고가 꾸준히 있었음.
  
- ▷ 특별회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91,319천원)에 대해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함.
  
- 또한,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부칙에 해당 조례로 인한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제구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였고, 2023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연제구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하는 등 후속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9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출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2023년 12월 31일 만기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안 제10조)
- 관련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함(제4조제5호)  
법 24조제4항 ⇒ 법 제24조제2항으로 개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6. 27. ~ 7. 17.)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의 정비와 함께, 연제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3.6.1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제구 6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5개 지구는 2019년 ~ 2022년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민동의로 지구 해제되었으나, 1개 지구(거제1주거환경개선지구)가 존치 중으로 해제시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건축과 제공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연번	사업명	위치	구역면적(㎡)	지정일	해제일	비고
1	거제1 주거 환경개선지구	거제4동 769번지 일원 <b>거제4동</b>	18,697	93.07.31.	-	-
2	거제2 주거 환경개선지구	거제4동 766번지 일원 <b>거제4동</b>	33,007	95.05.18.	19.03.06.	<b>해제</b>
3	연산1 주거 환경개선지구	연산동 1811번지 일원 <b>연산3동</b>	70,574	90.12.22.	20.03.11.	<b>해제</b> 후 (가칭)연산7 재개발 추진
4	연산2 주거 환경개선지구	연산동 1941번지 일원 <b>연산6동</b>	34,187	93.03.05.	21.08.11.	<b>해제</b> 후 (가칭)연산9 재개발 추진
5	연산3 주거 환경개선지구	연산동 1876번지 일원 <b>연산6동</b>	16,614	93.11.11	22.03.30.	<b>해제</b> 후 (가칭)연산14 재개발 추진
6	연산4 주거 환경개선지구	연산동 1919번지 일원 <b>연산6동</b>	12,179	98.02.11	22.03.30.	<b>해제</b> 후 (가칭)연산14 재개발 추진

※ 거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위치도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구획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구획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구획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8호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발의의원 : 김기준(대표발의), 최홍찬, 차성민

###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연제구 소속 부설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 설치대상 장소 : 연제구청,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금련, 과정, 황금로 공영주차장 등이 해당됨.
  - 안 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시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음.
  - 안제8조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 2023. 6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협조”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357(2023.6.26.)] 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를 비롯하여 5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2023.7.5.)를 비롯하여 남구(2023.9.27.)에서 제정을 완료하였고, 해운대구가 현재 조례 제정 추진중에 있음.

<b>붙임</b>	<b>관계법령</b>
-----------	-------------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호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발의의원 : 정홍숙(대표발의), 변준호,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권종헌

##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연세구민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자원 확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극복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을 위한 사회적 향상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극복위원회 설치)와 안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극복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 ▷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우리구에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적용대상을 1인가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b>붙임</b>	<b>관계법령</b>
-----------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0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발의의원 : 소수련(대표발의), 권종현, 김기준,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최홍찬, 김미화

##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가 노인 인권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계획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인학대 예방 및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시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이 노인학대 및 보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부산광역시에서 위탁 운영 중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으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내 노인들의 인권 보장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복지정책과 제공**

○ 연제구 노인 인구수 : 45,715명(남 20,050명, 여 25,665명)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기관(연제구 관할)**>

운영기관	위탁법인	관할구역	주요사업	직원수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불국토	연제구 외 6개 구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노인학대 현장조사 학대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인권실태조사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연계 체계 구축	9명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 센터			학대피해노인 신변보호 전문심리치료 및 일상생활지원 가정복지지원사업	6명

※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

붙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 생략
4.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관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관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 ⑤ 생략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본조신설 2004. 1.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1호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발의의원 : 김미화(대표발의), 김현규, 이의찬, 변준호, 권종현,  
소수련, 최홍찬

##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13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를 신설하며, 새로이 설치되는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활용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1. 8.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참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4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 조항 신설 등을 명시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금번 임시회에서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임산부도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주차 공간에 교통약자와 함께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자함.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b>붙임</b>	<b>관계법령</b>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미화 의원 )**

**제13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면 이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선의 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7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출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내용

- 위탁사무명 :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 위탁사무 내용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신규 위탁대상

구분	어린이집명 (원장명)	소재지	정원 (현원)	위탁 기간	비 고
재위탁	연제구 거제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김수현)	법원북로 93, (거제1동, 거제센트럴자이아파트)	62명 (57명)	5년	▷ 최초 위탁기간 2019. 3. 1.~ 2024. 2. 28.
신규	키즈레일 거제역어린이집	거제동 419-2 (거제역 동해선 전면광장)	30명 (예정)	5년	▷ 준공 예정일 : 2024.상반기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연제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지도·감독
  -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보고
  - 위탁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운영실태, 회계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확인 점검 등

**나. 소요예산**

- 비용발생 요인 :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지원사항
  - 인 건 비: 원장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조리사 100%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다.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위탁운영), 제5조(위탁기간)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4. 검토의견

- 「연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 다만, 위탁 후 관련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b>붙임</b>	<b>관계법령</b>
-----------	-------------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929호, 2020. 7. 1., 일부개정]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9.>

②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18.4.9.>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05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9.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1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 라. 제 출 자 : 연제구청장

## 2. 제안이유

다함께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최대 정원	주요시설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우리아이꿈터	연산동 거제시장로 22번길 74, 2층	연면적 77.96㎡	20명	사무실, 놀이·활동공간, 주방 등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기존 수탁자 시설운영·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선정 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결정

○ 소요예산

(단위:명,천원)

사업명	산출 기준(2024년)	합계	국비(균특)	시비	구비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 센터장 1명 월 3,166천원 └ 돌봄교사 1명(종일제) 월 2,940천원 × 12개월	73,272	36,636	18,318	18,318
운영비	운영비(1개소당 월 1,000천원) - 월 1,000천원× 12개월	12,000	6,000	3,000	3,000

다.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4. 검토의견

-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본 동의안은 거제동 555-12번지 내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아이 꿈터(기존 위탁기간 : 2019.3.12.~2024.3.11.)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사무의 연속적, 안정적 사업추진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 다만, 위탁 후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및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6.]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893호, 2019. 12. 26., 제정]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05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